

##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### [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세이 수억마련 증권 투자신탁(주식)
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
3. 정정사유:

-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이익분배 관련 조항 정정
-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적용을 위한 문구수정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09년 12월 21일 시행)사항 반영하여 보고서 교부방법 변경
- 세법 개정(2010년 1월 1일)사항 반영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전		정정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표지	작성기준일: 2009.09.2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: 2009.10.08		작성기준일: 2010.01.08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: 2010.02.0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 의 연혁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 width: 15%;">변경시행일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 width: 85%;">변경 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04.07.23</td> <td>최초설정</td> </tr> <tr> <td>2006.02.10</td> <td>투자대상 변경 (주식부문 변경)</td> </tr> <tr> <td>2006.07.01</td> <td>투자대상 (투자증권의 차입 추가), 투자한도(' 투자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% 이하' 추가), 운용제한 변경(어음 추가)</td> </tr> <tr> <td>2008.05.08</td> <td>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</td> </tr> <tr> <td>2008.07.02</td> <td>투자대상 변경 (주식선물 추가)</td> </tr> <tr> <td>2008.10.21</td> <td>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</td> </tr> <tr> <td>2009.04.00</td> <td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[세이 수억마련 주식 투자신탁 → 세이 수억마련 증권 투자신탁(주식)]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변경시행일	변경 사항	2004.07.23	최초설정	2006.02.10	투자대상 변경 (주식부문 변경)	2006.07.01	투자대상 (투자증권의 차입 추가), 투자한도(' 투자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% 이하' 추가), 운용제한 변경(어음 추가)	2008.05.08	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	2008.07.02	투자대상 변경 (주식선물 추가)	2008.10.21	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	2009.04.00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[세이 수억마련 주식 투자신탁 → 세이 수억마련 증권 투자신탁(주식)]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 width: 15%;">변경시행일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 width: 85%;">변경 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04.07.23</td> <td>최초설정</td> </tr> <tr> <td>2006.02.10</td> <td>투자대상 변경 (주식부문 변경)</td> </tr> <tr> <td>2006.07.01</td> <td>투자대상 (투자증권의 차입 추가), 투자한도(' 투자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% 이하' 추가), 운용제한 변경(어음 추가)</td> </tr> <tr> <td>2008.05.08</td> <td>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</td> </tr> <tr> <td>2008.07.02</td> <td>투자대상 변경 (주식선물 추가)</td> </tr> <tr> <td>2008.10.21</td> <td>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</td> </tr> <tr> <td>2009.05.02</td> <td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[세이 수억마련 주식 투자신탁 → 세이 수억마련 증권 투자신탁(주식)]</td> </tr> <tr> <td>2010.01.00</td> <td>세법 개정(2010.01.01) 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09.12.21) 사항 반영 선취수수료 판매회사별 차등적용 및 이익분배관련 문구 수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변경시행일	변경 사항	2004.07.23	최초설정	2006.02.10	투자대상 변경 (주식부문 변경)	2006.07.01	투자대상 (투자증권의 차입 추가), 투자한도(' 투자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% 이하' 추가), 운용제한 변경(어음 추가)	2008.05.08	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	2008.07.02	투자대상 변경 (주식선물 추가)	2008.10.21	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	2009.05.02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[세이 수억마련 주식 투자신탁 → 세이 수억마련 증권 투자신탁(주식)]	2010.01.00	세법 개정(2010.01.01) 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09.12.21) 사항 반영 선취수수료 판매회사별 차등적용 및 이익분배관련 문구 수정
변경시행일	변경 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4.07.23	최초설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6.02.10	투자대상 변경 (주식부문 변경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6.07.01	투자대상 (투자증권의 차입 추가), 투자한도(' 투자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% 이하' 추가), 운용제한 변경(어음 추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8.05.08	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8.07.02	투자대상 변경 (주식선물 추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8.10.21	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9.04.00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[세이 수억마련 주식 투자신탁 → 세이 수억마련 증권 투자신탁(주식)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변경시행일	변경 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4.07.23	최초설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6.02.10	투자대상 변경 (주식부문 변경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6.07.01	투자대상 (투자증권의 차입 추가), 투자한도(' 투자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% 이하' 추가), 운용제한 변경(어음 추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8.05.08	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8.07.02	투자대상 변경 (주식선물 추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8.10.21	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9.05.02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[세이 수억마련 주식 투자신탁 → 세이 수억마련 증권 투자신탁(주식)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0.01.00	세법 개정(2010.01.01) 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09.12.21) 사항 반영 선취수수료 판매회사별 차등적용 및 이익분배관련 문구 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	-	2010.0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선취판매수수료 - Class A : 납입금액의 1%	선취판매수수료 - Class A : 납입금액의 1% 이내 <sup>1)</sup> <u>주 1) 납입금액의 1% 이내에서 판매회사가</u> <u>정하며,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</u> <u>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</u> <u>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</u> <u>합니다.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2010.0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 2 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	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.	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<u>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</u> <u>유보합니다.</u>
제 2 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<u>집합투자기구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</u> <u>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</u> <u>받고 있습니다.</u>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<u>집합투자기구가 아래의 일정요건을</u> <u>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</u> <u>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.</u>  [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 명시]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– 별도의 <u>소득과세</u> <u>부담</u> 이 없는 것이 원칙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<u>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</u> <u>이자•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</u> <u>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</u> <u>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</u> <u>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</u> <u>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</u> <u>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</u> <u>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u>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 (이하 삭제)
제 2 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2) 투자자에 대한 과세	2) 투자자에 대한 과세: 원천징수 원칙  -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,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,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. 다만,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(채권 등 제외)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, 벤처기업의 국내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·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  -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	2) 투자자에 대한 과세: 원천징수 원칙  - 투자자는 <u>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</u> <u>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</u> <u>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</u> <u>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</u> <u>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</u> <u>계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</u> <u>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</u> <u>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</u> <u>있습니다. 다만,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</u> <u>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</u> <u>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</u> <u>상장된 증권(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</u> <u>제외)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,</u>

	<p>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,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•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, 주식배당,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<p><u>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• 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•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</u></p> <p>-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,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•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, 주식배당,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제 2 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3)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	<p>3)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: 개인 15.4%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4%</p> <p>-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</p> <p>(중략)</p> <p><b>※ 상기 과세정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.</b></p> <p><b>※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</b></p>	<p>3)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: 개인 15.4%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4%</p> <p>- 거주자 개인이 받는 <u>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</u>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</p> <p>(중략)</p> <p><b>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/b></p>
제 3 부.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-	최근 결산기 내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
제 3 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2010.0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	최근 결산기 내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
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		2010.0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
운용자산규모		
제 4 부. 3.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2) 자산운용보고 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나</u> 투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-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</li> <li>2.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</li> </o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u>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li> <li>-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</li> <li>2.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</li> </ol> </li> </ul>
제 4 부. 3.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3) 자산보관• 관 리보고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법 제123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• 관리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투자자 또는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- 신탁업자가 자산보관• 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법 제<u>248 조</u>에서 규정한 자산보관• 관리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투자자 또는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- 신탁업자가 자산보관• 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u>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li> </ul>